

의안
번호

507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기 획 위 원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09. 03.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경수현의원 외 11명

나. 의안번호 : 제507호

다. 제출일자 : 2025. 08. 14.

라. 회부일자 : 2025. 08. 27.

2. 제안이유

- 구민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생존수영교육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 홍보 및 인식개선(안 제4조~제6조)
- 라.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8. 19. ~ 2025. 8. 25.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제정안은 수상 위기 상황 발생 시 구민이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생존수영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에서 제3조(구청장의 책무)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생존수영교육’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생존수영이 단순한 수영기술이 아닌 생존기술과 안전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안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는 지속가능한 교육 추진을 위해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계획에는 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교육장소 및 안전 관리 대책 등이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안전취약계층¹⁾을 고려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함.
- 안 제5조(지원)와 제6조(홍보 및 인식개선)는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와 구 시설의 우선 활용, 홍보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 인식개선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
- 안 제7조(위탁)와 제8조(협력체계)는 교육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명문화하고 있음.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 종합의견

- 이상과 같이 본 제정안은 수상 위기 발생 시 구민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생존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생존수영 교육 지원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2)의 '주민 복리증진'에 관한 자치사무에 해당함. 아울러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3조3)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책무를 지니고 있음.
- 이에 따라 주민 생명 보호 및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본 조례 제정은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2)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9.>

- 특히 서울시 다수 자치구가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의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 아동·청소년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과 달리 본 제정안은 일반 주민을 포괄하고, 안전취약계층을 명시함으로써 생애 전주기에 걸친 수상 안전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크다고 사료됨.
- 다만, 집행부에서는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시 자치구 생존수영 교육 대상 현황]

교육 대상		자치구
구 민	해당 자치구의 구민	광진
초등학생	구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강동, 구로, 금천, 성동, 양천, 영등포, 종로
어 린 이	13세 미만의 사람	도봉
아동·청소년	-아 동: 18세 미만인 사람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은평